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남궁역 의원 외 32명
- 의안번호 : 제808호
-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0일
-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2. 제 안 이 유

- 세계의 도시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산불, 폭우, 미세먼지 발생 등 자연재해에 대응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도시,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음. 서울의 공간 구조를 도시공원과 함께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이 필요한 시점임.
-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도시 조성 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진흥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함.
- 또한, 정원산업 및 지방정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,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운영·관리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,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용어를 추가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(안 제5조제3항).
- 다. 정원진흥실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제2항).
- 라.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.
- 마. 국가정원 신청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.
- 바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미첨부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을 환경도시와 녹색도시로 전환하고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개편하기 위해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조례’라 함)는 서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 함)에서 정하는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14일 제정(시행)되었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의 정원문화 및 진흥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, 정원도시 조성 추진 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고 있으며, ‘정원진흥실시계획’ 수립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여 정원문화 및 정원도시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으므로 시의적절하다 판단됨.
- 안 제5조제3항은 시민의 활동을 통해 정원문화의 육성과 확산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정원도시 조성 정책 추진 시 관 주도 일변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명시한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(조성, 관리)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사, 박람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을 이끌어 내는 기획이 필요할 것임.
- 안 제7조제2항은 ‘정원진흥실시계획’의 수립 및 시행에 포함될 사항을

규정한 것으로 법 제6조에서 산림청장이 수립한 '수목원·정원 조성진흥 기본계획'에 따라 서울시가 '수목원·정원 조성진흥실시계획'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에 근거하고 있음.

동 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산림청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(2021~2025)에 따른 '정원진흥실시계획'¹⁾을 수립·시행하지는 않았음.

최근 '정원도시'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, 서울시 주요 역점사업으로 정원도시가 언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시계획의 수립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, 이에 따라 안 제7조제2항에서 기본방향, 현황,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.

- 안 제11조는 지방정원²⁾ 조성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의 정원 문화확산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정원을 조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, 이에 따른 유지관리 및 정책방향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- 안 제12조는 국가정원 지정 신청과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가 조성·관리하는 지방정원 중 법 18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, 참고로 동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- 한편, 서울시는 '정원도시, 서울' 정책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의 녹색인프라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도시로의 전환을 피력한 바 있으므로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1) 수목원·정원 조성진흥실시계획, 수목원 조성진흥실시계획, 정원 조성진흥실시계획 등

2) 지방자치단체가 조성·운영하는 정원